

#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3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6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해 노동이사의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‘기관평가’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,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로 확대해석될 수 있어 서울시 주관 ‘자체 기관평가’ 로 수정함.

#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노동이사의 경영참여 실적을 자체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수정함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#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의2제2항 중 “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”를 “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의2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 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<u>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	제3조의2(시장의 책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<u>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##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“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14조 중 “노동자이사제”를 각각 “노동이사제”로 하고, 제2조부터 제13조  
까지 “노동자이사”를 각각 “노동이사”로 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·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 
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 
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 
한다.

제3조의3(기관장의 책무) 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 
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 
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) ① 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, 교육·배치,

- 승진·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,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.
-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·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습기회·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  - 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.
  - ⑤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동자이사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임명한 노동자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한 노동이사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, 상임이사 2인이내,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.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이사로 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<u>노동자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·공단·출연기관에 <u>노동자이사제</u>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, 대시민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"<u>노동자이사</u>"란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	<p>서울특별시 <u>노동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노동이사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"<u>노동이사</u>"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2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·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의3(기관장의 책무) 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(대상기관)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<u>노동자이사</u>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<u>노동자이사</u>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4조(대상기관) ① ----- ----- -----<u>노동이사</u>----- ----- 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 <u>노동이사</u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임명) ① <u>노동자이사</u>는 지방 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.</p> <p>② <u>노동자이사</u>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③ <u>노동자이사</u>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	<p>제5조(임명) ① <u>노동이사</u>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노동이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노동이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자격) ① <u>노동자이사</u>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<u>노동자이사</u>가 될 수 없다.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 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제6조(자격) ① <u>노동이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u>노동이사</u>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정수) 공사 등에 두는 <u>노동자</u></p>	<p>제7조(정수) -----<u>노동</u></p>





현행	개정안
<p>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.</p>
<p>제11조(제척·회피) ① <u>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<u>노동자이사</u>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제척·회피) ① <u>노동이사</u></p> <p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노동이사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기관장의 책무) ① <u>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, 노동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노동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.</u></p> <p>② <u>기관장은 노동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,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자이사</u>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·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)</p> <p>① <u>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, 교육·배치, 승진·전보 등의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,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.</u></p> <p>② <u>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</u>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·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습기회·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·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⑤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<u>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④ 노동이사----- -----노동이사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.</p>
<p>제13조(수당 등) 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3조(수당 등) ① 노동이사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노동이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노동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</p>	<p>제1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노동이사제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따른다.	---